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867

발의연월일: 2021. 3. 18.

발 의 자:진성준·강병원·김민석

박상혁 • 박홍근 • 소병훈

우원식 • 위성곤 • 이동주

전혜숙 · 조오섭 의원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산업단지 또는 기술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후 3년 내에 건축물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단지 개발 초기에는 신축 건축물에 공실률이 높고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감면세액을 추정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바, 산업용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등을 통해 초기 창업자금이 부족하지만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해당 건축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산업용 건축물등을 보유한 업체와 창업기업의 상생 효과를 기대할 수있을 것임.

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창업 중소기업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취득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더 라도 추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5항제1호).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5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추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5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	1
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	
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	
니하는 <u>경우</u>	경우.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지역에서 창
	업하는 중소기업자에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
	<u>다.</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